

지식출판원 규정

지식출판콘텐츠원 운영규정

규정번호 : 4-1-94

제 정 일 : 1975.3.1.

전 면 개 정 일 : 2020.12.1.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지식출판원은 본 대학교의 교육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도서를 간행함으로써 학문의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개정 2014.11.28)

제 2 조 (사업) 지식출판원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14.11.28)

1. 학술도서, 교양도서, 교재의 출판
2. 각종 외국어사전 편찬
3. 학교 간행물의 출판
4. 출판도서의 보급 및 관리
5. 기타 출판 및 판매업무에 관계되는 사업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이하 “출판원”이라 한다)의 사업, 조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2018.7.8., 2020.12.1.)

제2조 (사업) 출판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육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도서를 간행함으로써 학문의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4.11.28., 2018.7.8., 2020.12.1.)

1. 학술도서, 교양도서, 교재의 출판
2. 각종 외국어사전 편찬
3. 학교 간행물의 출판
4. 출판도서의 보급 및 관리
5. 기타 출판 및 판매업무에 관계되는 사업

제 2 장 기 구

제 3 조 (기구) 지식출판원은 본 대학교 총장직속기관으로 한다. 총장은 지식출판원을 대표하며, 지식출판원장은 총장이 위임하는 권한에 의하여 소관 업무를 통할하며,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4.11.28)

제 4 조 (조직) 지식출판원에 원장, 운영팀장, 그리고 편집, 경리, 영업, 인쇄 및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개정 2014.11.28.)

제2장 기구

제3조 (기구) 출판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직속기관으로 한다. 출판원장은 출판원을 대표하고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11.28., 2020.12.1.)

제4조 (조직) ① 출판원은 원장, 출판위원회, 사전편찬위원회, 출판기획위원회, 서울시 캠퍼스타운 운영위원회, 행정운영팀, 출판콘텐츠팀,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단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28., 2020.12.1.)

② 출판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12.1.)

③ 출판원의 운영과 출판지원을 위하여 사무직 사원과 현장직 사원을 둔다. (신설 2020.12.1.)

제 3 장 위 원 회

제 5 조 (위원회) 지식출판원 운영 및 도서출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판위원회를 두며, 사전편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전편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4.11.28)

제 6 조 (구성) ① 출판위원회는 서울·글로벌부총장, 서울·글로벌교무처장, 기획조정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지식출판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학문영역별 교수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울캠퍼스 부총장으로 하고, 간사는 지식출판원 운영팀장이 된다.(개정 2014.11.28, 2015.5.19)

② 출판위원회에는 학술, 교양도서 등의 중요도서 출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판기획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는 출판기획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6. 4. 1, 2014.11.28)

③ 사전편찬위원회는 서울부총장, 지식출판원장, 연구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사전전공교수 1인, 어학과 단대별 교수 1~2인으로 9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 부위원장은 지식출판원장, 사전전공교수로 하고, 간사는 지식출판원 운영팀장이 된다.(신설 2014.11.28)

④ 사전편찬위원회 산하에 분과별 편찬위원회를 두며, 감수위원회, 사전편찬과를 둘 수 있다.(신설 2014.11.28)

제 7 조 (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일반직위원의 경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8 조 (회의소집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 (심의사항) ① 출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11.28)

1. 지식출판원 운영의 기본 방침 및 사업계획
2. 출판물의 기획 및 선정
3. 지식출판원의 예산 및 결산
4. 지식출판원 규정의 개·폐
5. 기타 지식출판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사전편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4.11.28)

1. 사전편찬에 대한 방향 및 정책결정
2. 사전편찬에 대한 기획 및 선정
3. 기타 원활한 사전편찬 활동을 위한 기획 및 건의사항

제3장 위원회

제5조 (위원회) ① 출판원 운영 및 도서출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판위원회를 두며, 사전편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전편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1.28., 2020.12.1.)

② 출판위원회에는 출판물의 기획 및 선정 등 출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판기획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0.12.1.)

③ 출판위원회, 사전편찬위원회, 출판기획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세칙에 따른다. (신설 2020.12.1.)

제6조 (구성) <삭제 2020.12.1.>

제7조 (임기) <삭제 2020.12.1.>

제8조 (회의소집 및 의결) <삭제 2020.12.1.>

제9조 (심의사항) <삭제 2020.12.1.>

제 4 장 운 영

제10조 (운영) 지식출판원장은 출판위원회 및 사전편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4.11.28)

제11조 (재정) ① 지식출판원의 재정은 사업수입금 및 학교보조금, 기타 기부금으로 충당하며 교비회계와 별도로 운영한다.(개정 2014.11.28)

② 지식출판원회계에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교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개정 2014.11.28)

③ 지식출판원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4.11.28)

제12조 (시행세칙) 지식출판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4.11.28)

제4장 운영

제10조 (운영) ① 출판원장은 출판원 운영규정, 직제규정, 위임전결규정, 취

업규칙 및 여비규정과 그 위임 세칙에 따라 운영하되, 출판위원회 및 사전편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 한다. (개정 2014.11.28., 2020.12.1.)

② 출판원의 재정, 예·결산, 감사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0.12.1.)

③ 출판원의 조직, 업무분장 및 정원에 관하여는 출판원 직제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0.12.1.)

④ 출판원에서 직접 채용한 사원의 채용,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출판원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0.12.1.)

⑤ 출판원 사원의 공무 출장에 따른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출판원 여비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0.12.1.)

제11조 (재정) ① 출판원 재정은 사업수입금 및 학교보조금, 기타 기부금으로 충당하며 교비회계와 별도로 운영한다. (개정 2014.11.28., 2018.7.8., 2020.12.1.)

② 출판원 회계에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교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2018.7.8., 2020.12.1.)

③ 출판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신설 2020.12.1.)

④ 회계사무 중 현금출납은 재무팀에서 취급하되 학교 재무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12.1.)

제12조(시행세칙) <삭제 2020.12.1>

제13조 (예·결산) ① 출판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익년도 예산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출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출판원장은 출판원에서 매 회계연도에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여 출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과 사업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1.]

제14조(각종 장부의 기입비치) 출판원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장부 또는 문서에 기입비치하여야 한다.

1. 회계에 관한 사항 및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비품·소모품의 보관 및 수불에 관한 사항
3. 출판물의 기획·제작·보관·배포 및 판매에 관한 사항
4. 기타 출판문화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본조신설 2020.12.1.]

제15조(감사) 총장은 출판원 운영의 적정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총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출판원 운영상황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1.]

제16조 (해산) 출판원이 해산할 경우 모든 재산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귀속된다.

[본조신설 2020.12.1.]

제17조 (시행세칙 및 내규) 출판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 및 내규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정·시행한다.

[본조신설 2020.12.1.]

부 칙

- (1) 이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1993년 9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1995년 5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01년 5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6)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7) 이 규정은 직제규정개정(2007. 7. 12)에 따라 개정 시행한다.
- (8) 이 규정은 2014년 11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③ 이 규정은 1993년 9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④ 이 규정은 1995년 5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⑤ 이 규정은 2001년 5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⑥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⑦ 이 규정은 직제규정개정(2007. 7. 12)에 따라 개정 시행한다.
 - ⑧ 이 규정은 2014년 11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⑨ 이 규정은 직제규정 개정(2015. 5. 19)에 따라 개정 시행한다.
 - ⑩ 이 규정은 직제규정 개정(2020. 12. 1)에 따라 개정 시행한다.